

—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7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7월 16일

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○ 고아읍지역은 도·농 복합지역으로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상당수준 저하되어

○ 읍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고아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 매입(취득)

- 위 치 : 고아읍 관심리 623-1번지 외 1필(잡종지)
- 면 적 : 1,845㎡(558평)
- 추정가격 : 333,945천 원(공시지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시행령 제84조
- 구 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고아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으로서 고아읍은 도·농복합지역으로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